

#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병주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61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4월 1일

발 의 자 : 전병주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오현정, 이정인, 여 명, 장인홍,  
박순규, 김경영, 채유미, 문장길,  
임종국, 이병도, 이준형, 양민규,  
권순선, 김 경 의원 (14명)

## 1. 제안이유

-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양한 시설에서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, 낮은 수준의 보수와 적은 복지제도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.
- 전문적인 기능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함(안 제3조제1항).
- 나.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(안 제3조제2항).
- 다.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확대 강화하여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토록 함(안 제4조제2항제8호).
- 라.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”을 “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활동 프로그램,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,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에 관한 사항

제7조 중 “노력하여야 하며”를 “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5조에 따라 <u>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</u>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<u>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 (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한다.</p> <p>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·평가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5조에 따라 <u>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활동 프로그램,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</u>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<u>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 (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한다.</p> <p>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·평가</p>

2.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
  3.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 실시
  4.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
  5.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,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
  6.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
  7. 청소년의 수련활동, 교류활동,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
  8.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 사항
  9.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 10.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2.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
  3.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 실시
  4.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
  5.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,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
  6.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
  7. 청소년의 수련활동, 교류활동,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
  8.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,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에 관한 사항
  9.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 10.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)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)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(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) “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” 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20,000천원

- 5년간 1회 20,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

다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중 연구용역 1회 실시
-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비용은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2016년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청년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(안 제7조)

라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20,000천원

(단위: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	세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 조사연구	20,000	-	-	-	-	20,000
	소계(b)	20,000	-	-	-	-	20,000
□ 총 비용(b-a)		20,000	-	-	-	-	20,000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여차민

분석관(주무관) 김민호

☎ 02-2180-7953

e-mail : waterkim@seoul.go.kr